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중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진중오 · 서천호 · 김상훈
고동진 · 서지영 · 김승수
김용태 · 김예지 · 박수민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,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·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.

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·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최근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.

이에 미성년자 약취·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,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

생명·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87조, 제288조 제1항 및 제28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7조 중 “10년”을 “1년 이상 15년”으로 한다.

제288조제1항 중 “10년”을 “15년”으로 한다.

제289조제2항 중 “10년”을 “15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7조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<u>10년</u>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.	제287조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 ----- ----- <u>1년 이상 15년</u> ----- -----.
제288조(추행 등 목적 약취, 유인 등) ① 추행, 간음,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<u>10년</u>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 · ③ (생 략)	제288조(추행 등 목적 약취, 유인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년</u>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89조(인신매매) ① (생 략) ② 추행, 간음, 결혼 또는 영리 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 람은 1년 이상 <u>10년</u>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. ③ · ④ (생 략)	제289조(인신매매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15년</u>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